



제 399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금지〉
■ 이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53호)

2022.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금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훈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2. 3. 3.

다. 회 부 일 : 2022.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표 매매의 금지(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u>
○ 과태료 부과 대상(1천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대상(1천만원 이하)
- <신설>	- <u>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조항 위반자</u>
- 징계정보자료 미제출자 등	- (현행과 같음)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방해자 등	- (현행과 같음)

최근 자동으로 주문을 입력하여 단시간에 대량의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매크로 프로그램¹⁾ 이용 압표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²⁾

1) 컴퓨터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될 때, 이 명령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드는 것. 즉, 일련의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작자가 매번 개개의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수행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하나의 새로운 명령어로 정의하여 이를 키보드의 특정 키 혹은 마우스 클릭으로 설정해 두는 것을 매크로 명령이라 하고, 이렇게 한 번의 키 입력으로 미리 기록해 놓은 여러 단계의 명령군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일컬어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등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검토, 최란, 과학기술법연구)

현재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³⁾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 처벌의 경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법조항은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상 암표 판매에 대해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동법에 따라 판매되는 온라인 암표 매매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입장권, 시설입장권 등 다른 분야의 암표판매 규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⁴⁾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람권 매집행위가 운동경기 관람권 뿐만 아니라 공연 등의 여러 분야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2) [친절한 뉴스K] ‘광클’해도 못 산 공연표…매크로에 속수무책, KBS, 2022.6.23.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생략)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 또한 개정안과 같이 체육 분야에서만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할 경우, 다른 분야(공연, 예술, 여행 등)의 암표매매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과 같은 일반법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49)이 상정(‘20.7.27)되었으나 대안반영 폐기된 바 있음.⁵⁾⁶⁾

5)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106075)의 경우, 폐기된 안(의안번호: 2100349)이 제시하고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매행위시의 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문화체육부장관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6) 제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1572)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매크로 방지 및 처벌 법안들이 발의되었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u>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55조(과태료) ① ----- ----- -----.
1. 2. (생략) ② ~ ⑤ (생략)	1. <u>제6조의2를 위반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자</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주요내용(조항)	발의일	심사경과
공연법 (2100349/ 태영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매입한 공연입장권 등을 매입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 금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6.11.	상정('20.7.27.)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법 (2100419/ 윤한홍)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 장애 주는 행위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6.12.	상정('20.7.28.) 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법 (2100504/ 정경희)	○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6.16.	상정('20.7.28.)
정보통신망법 (2105312/ 김기현)	○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11.13.	상정('21.2.1.)
정보통신망법 (2107566/ 이종배)	○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1.1.22.	미상정
정보통신망법 (2110810/ 양정숙)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 주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1.6.16.	미상정